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7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23.

발의자 : 한정애 · 신창현 · 송옥주
노웅래 · 서형수 · 유은혜
김정우 · 강훈식 · 백재현
양승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,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,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이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,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).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)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3(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

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26조의2(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)</u></p> <p><u>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26조의3(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개최 등)</u></p> <p><u>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u></p>

②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
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
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
개최되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
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
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
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
의 공공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
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